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혐오표현심의위원회 2025.12.1. 심의 결과 요약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혐오표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25년 12월 1일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에 따라 회원사에 게시된 게시물 및 댓글 등 15건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였다.

이번 심의 대상은 인종(5건), 종교(5건), 성적 지향(5건) 등 총 15건이다. 심의 결과, 위원회는 4건에 대해 '혐오표현에 해당함', 7건에 대하여 '해당없음'을 결정하였다. 4건에 대해서는 '제9조 제1항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회원사에게 제11조 제3항의 조치 여부에 대한 검토를 권고'하였다.

위원회는 혐오표현을 판단할 때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폭력을 선전·선동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판단을 할 때 단어의 의미 뿐 아니라 해당 심의 대상물이 게시된 맥락도 함께 고려하였다.

위원회는 제9조 제1항의 혐오표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특정 속성을 이유로 집단과 구성원에 대해 '비하·조롱하는 표현' 4건에 대해서는 개별 회원사가 자율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조치 여부에 대한 검토를 권고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제9조 제1항에 규정한 혐오표현에 해당하지 않은 게시물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하면서, 비하·조롱하는 표현이 가진 해악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개별 회원사가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둔 것이다.

이번 심의 결과에 따라 회원사는 '혐오표현' 4건에 대해 삭제 또는 해당표현을 가리거나 노출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 경고 문구 및 이용자 주의 문구 등을 표기하는 조치, 그밖에 혐오표현을 제한하거나 그에 준하는 조치 등을 취하게 된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혐오표현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심의번호 2025심혐-1-1
요 청 인 회원사
결 정 일 2025. 12. 1.

주 문

해당없음.

이 유

1. 요청의 요지

혐오표현의 사용과 유통을 억제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를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운영하는 회원사는 '인종·국가'와 관련한 게시물 "칭챙총 니하오 헤이~! 존나 당함"이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의를 요청했다.

2. 관련 규정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2023. 4. 27.제정, 2024. 2. 27.개정) 제2조, 제9조

제2조 (정의) ①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혐오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이하 '특정 속성'이라 한다)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2. 차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
3.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에 대한 표현
4.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자고 주장하는 표현
5.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해를 입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표현
② 전항에 규정되지 않은 용어의 정의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과 해석을 참조한다.

제9조 (혐오표현에 대한 판단) ① 혐오표현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2.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3.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② 제1항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한다.

3. 판단

1) 관련 법리의 검토

o 대한민국헌법 제21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자아의 실현과 진리의 발견에 기여한다. 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을 통해 민주적 정치 질서를 형성·유지해 나가야 하므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 최대한 보장을 받아야 한다.

o '혐오표현'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는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이라는 이유만으로 표현의 자유 보호영역에서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혐오적 표현도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되,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헌재 2019. 11. 28. 2017헌마1356). 우리나라에는 혐오표현에 대해 직접적인 형사처벌 조항이 따로 존재하지 않은데, 혐오표현 중에는 특정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여 형법상 모욕죄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하는 것이 적지 않다. 이러한 범위 내에서는 현실적으로 모욕죄가 혐오표현에 대한 일종의 제한, 규제로 기능하는 측면이 있다(헌재 2020. 12. 23. 2017헌바456 등;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7도19229 판결).

o '인종·국가'를 이유로 한 차별과 관련하여 「세계인권선언」 제2조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2조,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1조 등은 인종에 따른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2조는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더 나아가 개인이 속한 국가 또는 영토가 독립국, 신탁통치지역, 비자치지역이거나 또는 주권에 대한 여타의 제약을 받느냐에 관계없이, 그 국가 또는 영토의 정치적, 법적 또는 국제적 지위에 근거하여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1조 1.은 "인종차별"이라 함은 인종, 피부색, 가문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근거를 둔 어떠한 구별, 배척, 제한 또는 우선권을 말하며 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는 기타 어떠한 공공생활의 분야에 있어서든 평등하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인정, 향유 또는 행사를 무효화시키거나 침해하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조 1.은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토 내에 있으며, 그 관할권 하에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하여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존중하고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o '인종·국가'와 관련한 혐오표현 게시물의 처리에 있어서는, 현행법상 모욕죄 등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례를 제외한다면 혐오표현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것이 용이

하지 않다는 점, 또 혐오적이라는 이유로 표현행위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는 점, 혐오표현의 해악을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는 것은 중장기적인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점, 인터넷상의 혐오표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와 정보통신망 사업자의 태도와 책임 의식이 중요하다는 점, 규제되는 혐오표현의 범위를 확대하고 제재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과 혐오 표현으로 판단되는 범위를 좁히고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넓혀 보장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 간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판단

o「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은 특정 집단이 혐오표현으로 인해 차별·배제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보장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동시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한 비판적 표현을 통해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는 경우에도 무조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제3조).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을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으로 규정하면서(제2조 제1항 제1호), '혐오표현'에 해당하려면 첫째,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둘째,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셋째,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제9조 제1항). 이러한 판단을 할 때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하도록 했다(제9조 제2항).

o「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속성'을 판단할 때는 해당 속성의 유형, 해당 속성 집단의 규모, 해당 속성 집단이 사회적 소수이거나 약자인지 아니면 사회적 다수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이나 욕설, 비속어 등에 대해 정보통신망사업자는 약관 등 정책에 따라 일정한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 '단어가 쓰인 맥락'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단어가 쓰인 문맥뿐만 아니라 게시글 작성의 목적과 용도, 서비스나 게시 공간의 특성, 초래되는 위험, 게시자의 속성,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기존의 유사한 결정에서 해석하고 적용한 기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o 심의대상 게시물은 인터넷상의 카페 게시물로 현재 원문이 삭제되어 확인이 불가한 상태이다. 심의대상 게시물 '칭챙총 니하오 헤이~! 존나 당함' 중 '칭챙총'은 서양권에서 동양인, 특히 중국인을 조롱할 때 쓰이는 비하표현으로 볼 수 있다. '칭챙총'이라는 비하표현을 사용한 문맥을 확인해 보면 함께 쓰인 '당함'이라는 피동 표현에서 게시자 자신의 경험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심의대상 게시물이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의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한 차별의 정당화·조장·강화표현이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혐오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위와 같은 이유에서 요청인의 심의 요청 대상 게시물은「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제9

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혐오표현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심의번호 2025심혐-1-2
요 청 인 회원사
결 정 일 2025. 12. 1.

주 문

해당없음.

이 유

1. 요청의 요지

혐오표현의 사용과 유통을 억제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를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운영하는 회원사는 '인종·국가'와 관련한 뉴스 게시물의 댓글 "외국인 중에 중국인(조선족,한족) 모두 추방시켜주세요.. 중국애들이 무서워요...특히 한족.."이「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의를 요청했다.

2. 관련 규정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2023. 4. 27.제정, 2024. 2. 27.개정) 제2조, 제9조

제2조 (정의) ①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혐오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이하 '특정 속성'이라 한다)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2. 차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
3.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에 대한 표현
4.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자고 주장하는 표현
5.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해를 입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표현
② 전항에 규정되지 않은 용어의 정의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과 해석을 참조한다.

제9조 (혐오표현에 대한 판단) ① 혐오표현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2.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3.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② 제1항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한다.

3. 판단

1) 관련 법리의 검토

o 대한민국헌법 제21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자아의 실현과 진리의 발견에 기여한다. 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을 통해 민주적 정치 질서를 형성·유지해 나가야 하므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 최대한 보장을 받아야 한다.

o '혐오표현'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는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이라는 이유만으로 표현의 자유 보호영역에서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혐오적 표현도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되,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헌재 2019. 11. 28. 2017헌마1356). 우리나라에는 혐오표현에 대해 직접적인 형사처벌 조항이 따로 존재하지 않은데, 혐오표현 중에는 특정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여 형법상 모욕죄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하는 것이 적지 않다. 이러한 범위 내에서는 현실적으로 모욕죄가 혐오표현에 대한 일종의 제한, 규제로 기능하는 측면이 있다(헌재 2020. 12. 23. 2017헌바456 등;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7도19229 판결).

o '인종·국가'를 이유로 한 차별과 관련하여 「세계인권선언」 제2조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2조,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1조 등은 인종에 따른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2조는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더 나아가 개인이 속한 국가 또는 영토가 독립국, 신탁통치지역, 비자치지역이거나 또는 주권에 대한 여타의 제약을 받느냐에 관계없이, 그 국가 또는 영토의 정치적, 법적 또는 국제적 지위에 근거하여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1조 1.은 "인종차별"이라 함은 인종, 피부색, 가문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근거를 둔 어떠한 구별, 배척, 제한 또는 우선권을 말하며 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는 기타 어떠한 공공생활의 분야에 있어서든 평등하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인정, 향유 또는 행사를 무효화시키거나 침해하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조 1.은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토 내에 있으며, 그 관할권 하에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하여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존중하고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o '인종·국가'와 관련한 혐오표현 게시물의 처리에 있어서는, 현행법상 모욕죄 등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례를 제외한다면 혐오표현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것이 용이

하지 않다는 점, 또 혐오적이라는 이유로 표현행위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는 점, 혐오표현의 해악을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는 것은 중장기적인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점, 인터넷상의 혐오표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와 정보통신망 사업자의 태도와 책임 의식이 중요하다는 점, 규제되는 혐오표현의 범위를 확대하고 제재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과 혐오 표현으로 판단되는 범위를 좁히고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넓혀 보장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 간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판단

o「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은 특정 집단이 혐오표현으로 인해 차별·배제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보장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동시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한 비판적 표현을 통해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는 경우에도 무조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제3조).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을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으로 규정하면서(제2조 제1항 제1호), '혐오표현'에 해당하려면 첫째,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둘째,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셋째,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제9조 제1항). 이러한 판단을 할 때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하도록 했다(제9조 제2항).

o「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속성'을 판단할 때는 해당 속성의 유형, 해당 속성 집단의 규모, 해당 속성 집단이 사회적 소수이거나 약자인지 아니면 사회적 다수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이나 욕설, 비속어 등에 대해 정보통신망사업자는 약관 등 정책에 따라 일정한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 '단어가 쓰인 맥락'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단어가 쓰인 문맥뿐만 아니라 게시글 작성의 목적과 용도, 서비스나 게시 공간의 특성, 초래되는 위험, 게시자의 속성,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기존의 유사한 결정에서 해석하고 적용한 기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o 심의대상 게시물은 언론 기사 "○○ 밤거리, 中여성 장악…불법·보건 사각지대 '경고등'"의 댓글이다. 해당 뉴스는 특정 지역의 유흥가가 중국인 여성을 중심으로 급속하게 재편되고 있는 현실을 보도하고 행정과 치안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도시 리스크를 진단한 기사이다. 심의대상 게시물은 이러한 기사에 대한 댓글로, "외국인 중에 중국인(조선족,한족) 모두 추방시켜주세요.. 중국애들이 무서워요...특히 한족.."라는 표현이다. 이 게시물 표현 중에 '추방'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 가이드라인 제2조 4항의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자고 주장하는 표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나 문맥을 살펴보면 '추방 시켜주세요'라는 표현에서 표현물 게시자 개인의 소망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의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한 차별의 정당화·조장·강화표현이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혐오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위와 같은 이유에서 요청인의 심의 요청 대상 게시물은「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제9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혐오표현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심의번호 2025심혐-1-3
요 청 인 회원사
결 정 일 2025. 12. 1.

주 문

혐오표현에 해당함.

이 유

1. 요청의 요지

혐오표현의 사용과 유통을 억제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를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운영하는 회원사는 '인종·국가'와 관련한 뉴스 게시물의 댓글 "조선족맴에 조선문화가 중국꺼다란다. 조선족은 암덩어리다.발본색원해서 우리땅에 뿌내리지 못하게해야한다."가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의를 요청했다.

2. 관련 규정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2023. 4. 27.제정, 2024. 2. 27.개정) 제2조, 제9조

제2조 (정의) ①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혐오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이하 '특정 속성'이라 한다)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2. 차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
3.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에 대한 표현
4.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자고 주장하는 표현
5.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해를 입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표현
② 전항에 규정되지 않은 용어의 정의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과 해석을 참조한다.

제9조 (혐오표현에 대한 판단) ① 혐오표현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2.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3.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② 제1항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한다.

3. 판단

1) 관련 법리의 검토

o 대한민국헌법 제21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자아의 실현과 진리의 발견에 기여한다. 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을 통해 민주적 정치 질서를 형성·유지해 나가야 하므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 최대한 보장을 받아야 한다.

o '혐오표현'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는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이라는 이유만으로 표현의 자유 보호영역에서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혐오적 표현도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되,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헌재 2019. 11. 28. 2017헌마1356). 우리나라에는 혐오표현에 대해 직접적인 형사처벌 조항이 따로 존재하지 않은데, 혐오표현 중에는 특정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여 형법상 모욕죄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하는 것이 적지 않다. 이러한 범위 내에서는 현실적으로 모욕죄가 혐오표현에 대한 일종의 제한, 규제로 기능하는 측면이 있다(헌재 2020. 12. 23. 2017헌바456 등;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7도19229 판결).

o '인종·국가'를 이유로 한 차별과 관련하여 「세계인권선언」 제2조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2조,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1조 등은 인종에 따른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2조는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더 나아가 개인이 속한 국가 또는 영토가 독립국, 신탁통치지역, 비자치지역이거나 또는 주권에 대한 여타의 제약을 받느냐에 관계없이, 그 국가 또는 영토의 정치적, 법적 또는 국제적 지위에 근거하여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1조 1.은 "인종차별"이라 함은 인종, 피부색, 가문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근거를 둔 어떠한 구별, 배척, 제한 또는 우선권을 말하며 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는 기타 어떠한 공공생활의 분야에 있어서든 평등하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인정, 향유 또는 행사를 무효화시키거나 침해하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조 1.은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토 내에 있으며, 그 관할권 하에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하여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존중하고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o '인종·국가'와 관련한 혐오표현 게시물의 처리에 있어서는, 현행법상 모욕죄 등의 구성요건

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례를 제외한다면 혐오표현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 또 혐오적이라는 이유로 표현행위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는 점, 혐오표현의 해악을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는 것은 중장기적인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점, 인터넷상의 혐오표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와 정보통신망 사업자의 태도와 책임 의식이 중요하다는 점, 규제되는 혐오표현의 범위를 확대하고 제재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과 혐오 표현으로 판단되는 범위를 좁히고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넓혀 보장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 간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판단

o「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은 특정 집단이 혐오표현으로 인해 차별·배제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보장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동시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한 비판적 표현을 통해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는 경우에도 무조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제3조).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을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으로 규정하면서(제2조 제1항 제1호), '혐오표현'에 해당하려면 첫째,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둘째,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셋째,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제9조 제1항). 이러한 판단을 할 때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하도록 했다(제9조 제2항).

o「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속성'을 판단할 때는 해당 속성의 유형, 해당 속성 집단의 규모, 해당 속성 집단이 사회적 소수이거나 약자인지 아니면 사회적 다수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이나 욕설, 비속어 등에 대해 정보통신망사업자는 약관 등 정책에 따라 일정한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 '단어가 쓰인 맥락'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단어가 쓰인 문맥뿐만 아니라 게시글 작성의 목적과 용도, 서비스나 게시 공간의 특성, 초래되는 위험, 게시자의 속성,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기존의 유사한 결정에서 해석하고 적용한 기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o 심의대상 게시물은 언론 기사 "주범은 1991년생 조선족 ○○○" 얼굴·신상 확산"의 댓글이다. 해당 뉴스는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납치된 한국인 대학생 고문 살해 사건에 대한 보도로, 해당 사건의 주범으로 알려진 조직원 ○○○의 사진과 신상정보가 인터넷상에 퍼지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이다. 심의대상 게시물은 이러한 기사에 대한 댓글로, "조선족땜에 조선문화가 중국꺼다란다. 조선족은 암덩어리다.발본색원해서 우리땅에 뿌내리지 못하게해야한다."라는 표현이다. 심의대상 게시물은 특정 속성(중국, 조선족, 한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을 암덩어리로 비하하고 있으며, '발본색원해서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해야한다'는 표현은 특정 집단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자고 주장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이 게시물은 7명의 위원 전원의 일치로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의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한 차별의 정당화·조장·강화표현이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혐오표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4. 결론

위와 같은 이유에서 요청인의 심의 요청 대상 게시물은「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혐오표현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심의번호 2025심혐-1-4
요 청 인 회원사
결 정 일 2025. 12. 1.

주 문

제9조 제1항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회원사에게 제11조 제3항의 조치 여부에 대한 검토를 권고함.

이 유

1. 요청의 요지

혐오표현의 사용과 유통을 억제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를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운영하는 회원사는 '인종·국가'와 관련한 뉴스 게시물의 댓글 "조선족들은 거의다가 살인마에 사기꾼 그냥 한국말 어늘하게하는 중국넘들 캭 퇘 조선쓰레기족"가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의를 요청했다.

2. 관련 규정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2023. 4. 27.제정, 2024. 2. 27.개정) 제2조, 제9조, 제11조

제2조 (정의) ①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혐오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이하 '특정 속성'이라 한다)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2. 차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
3.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에 대한 표현
4.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자고 주장하는 표현
5.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해를 입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표현
② 전항에 규정되지 않은 용어의 정의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과 해석을 참조한다.

제9조 (혐오표현에 대한 판단) ① 혐오표현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2.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3.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② 제1항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한다.

제11조 (혐오표현에 대한 조치) ① 회원사는 혐오표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혐오표현 조치”라 한다)를 취할 수 있다.
1. 삭제 조치
2. 해당 표현을 가리거나 노출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
3. 경고 문구, 이용자 주의 문구 등을 표기하는 조치
4. 그 밖에 혐오표현을 제한하거나 그에 준하는 조치
② 회원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혐오표현 조치를 한 후 그 조치 사실을 지체 없이 정보 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 게재자의 사정으로 조치 사실을 알리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나, 회원사별 정책에 따라 통보 대상이 아닌 경우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회원사는 제9조 제1항에 따른 혐오표현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비하·조롱하는 표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판단

1) 관련 법리의 검토

o 대한민국헌법 제21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자아의 실현과 진리의 발견에 기여한다. 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을 통해 민주적 정치질서를 형성·유지해 나가야 하므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 최대한 보장을 받아야 한다.

o ‘혐오표현’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는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이라는 이유만으로 표현의 자유 보호영역에서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혐오적 표현도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되,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헌재 2019. 11. 28. 2017헌마1356). 우리나라에는 혐오표현에 대해 직접적인 형사처벌 조항이 따로 존재하지 않은데, 혐오표현 중에는 특정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여 형법상 모욕죄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하는 것이 적지 않다. 이러한 범위 내에서는 현실적으로 모욕죄가 혐오표현에 대한 일종의 제한, 규제로 기능하는 측면이 있다(헌재 2020. 12. 23. 2017헌바456 등;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7도19229 판결).

o ‘인종·국가’를 이유로 한 차별과 관련하여 「세계인권선언」 제2조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2조,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1조 등은 인종에 따른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2조는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

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더 나아가 개인이 속한 국가 또는 영토가 독립국, 신탁통치지역, 비자치지역이거나 또는 주권에 대한 여타의 제약을 받느냐에 관계없이, 그 국가 또는 영토의 정치적, 법적 또는 국제적 지위에 근거하여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1조 1.은 '인종차별'이라 함은 인종, 피부색, 가문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근거를 둔 어떠한 구별, 배척, 제한 또는 우선권을 말하며 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는 기타 어떠한 공공생활의 분야에 있어서든 평등하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인정, 향유 또는 행사를 무효화시키거나 침해하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조 1.은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토 내에 있으며, 그 관할권 하에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하여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존중하고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o '인종·국가'와 관련한 혐오표현 게시물의 처리에 있어서는, 현행법상 모욕죄 등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례를 제외한다면 혐오표현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 또 혐오적이라는 이유로 표현행위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는 점, 혐오표현의 해악을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는 것은 중장기적인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점, 인터넷상의 혐오표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와 정보통신망 사업자의 태도와 책임 의식이 중요하다는 점, 규제되는 혐오표현의 범위를 확대하고 제재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과 혐오 표현으로 판단되는 범위를 좁히고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넓혀 보장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 간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판단

o「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은 특정 집단이 혐오표현으로 인해 차별·배제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보장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동시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한 비판적 표현을 통해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는 경우에도 무조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제3조).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을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으로 규정하면서(제2조 제1항 제1호), '혐오표현'에 해당하려면 첫째,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둘째,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셋째,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제9조 제1항). 이러한 판단을 할 때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하도록 했다(제9조 제2항). 한편,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해 비하·조롱하는 표현에 대해 회원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11조 제3항).

o「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속성'을 판단할 때는 해당 속성의 유형, 해당 속성 집단의 규모, 해당 속성 집단이 사회적 소수이거나 약자인지 아니면 사회적 다수나 주류

를 차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이나 욕설, 비속어 등에 대해 정보통신망사업자는 약관 등 정책에 따라 일정한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제11조 제3항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도 문제가 된 게시물의 내용과 전체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소 거친 언사나 욕설, 품위나 격조를 잃은 표현의 수준을 넘어 오로지 특정 속성 집단이나 구성원을 비하·조롱하기 위하여 작성된 때로 그 적용이 한정되어야 한다. 또 '단어가 쓰인 맥락'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단어가 쓰인 문맥뿐만 아니라 게시글 작성의 목적과 용도, 서비스나 게시 공간의 특성, 초래되는 위험, 게시자의 속성,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기존의 유사한 결정에서 해석하고 적용한 기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o 다만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즉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해 비하·조롱하는 표현에(이하 '비하·조롱 표현')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제11조 제3항). 혐오표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 가이드라인에서 이러한 '비하·조롱 표현'을 적시하고 각 개별 회원사가 자율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둔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이라는 공론의 장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혐오표현을 명확히 해석하기 위함이다. 종종 단순한 '비하·조롱 표현'을 '혐오표현'으로 오인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시도가 사회 각계에서 존재한다. 각종 단체는 자신들에 대한 단순한 비판의 의미로 표현되는 '비하·조롱 표현'에 대하여도 혐오표현임을 주장하며 삭제 등 엄격한 조치를 요구하나, 이러한 요구가 명확한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수용될 경우 일반시민의 표현의 자유는 불합리한 제한을 받으며 우리 사회 공론의 장으로써 인터넷이 가지는 의미와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 둘째,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각 회원사 정책의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함이다. 본 가이드라인에 의해 혐오표현으로 결정될 경우 모든 회원사는 해당 표현에 대하여 제11조 제1항의 각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혐오표현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해당 회원사가 지향하는 사업의 모습과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 표현에 대하여는 각 회원사의 다양한 정책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혐오표현에 이르지 아니하나 표현의 수용자 입장에서 건전하지 못한 표현에 대하여 회원사 자율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셋째, 혐오표현에 이르지 아니한 '비하·조롱 표현'이라 할지라도 그 판단에 있어서 회원사 일방의 결정에 의하는 것보다는 제3의 전문적 독립기관에 의하는 것이 회원사의 영업의 자유와 일반 시민의 표현의 자유간의 충돌을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KISO는 회원사로 구성되었지만 각 회원사의 이해관계가 다양한 바 특정 회원사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해 인터넷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설립된 독립적 전문 자율정책기구다. 따라서 혐오표현에 이르지 못한 '비하·조롱 표현'이라 할지라도 그 여부가 KISO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짐으로써 법익충돌의 조화에 기여할 수 있다.

o 심의대상 게시물은 언론 기사 ""조선족 ○○○" 신상공개…텔레그램 자경단에 몰리는 '제보'"라는 기사에 달린 댓글이다. 해당 뉴스는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납치된 한국인 대학생 고문 살해 사건의 핵심 가담자로 지목된 한 남성의 신상이 공개되고 이에 대한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이다. 심의대상 게시물은 이 기사의 댓글로, "조선족들은 거의다가 살인마에 사기꾼 그냥 한국말 어늘하게하는 중국넘들 캭 퇘 조선쓰레기족"이라는 표현이다. 심의대상

게시물은 심의대상 게시물이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의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한 차별의 정당화·조장·강화표현이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혐오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살인마, 사기꾼, 쓰레기' 등 자극적이고 주관적, 경멸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을 비하·조롱하는 표현으로 판단된다.

o 한편 일부 위원은 이 게시물이 조선족에 특정 범죄 이미지를 부여하고 정상인과 구별하여 무능력하다고 함으로써 특정 속성(민족)을 기반으로 특정 집단(조선족)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고 그들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 조장, 강화하는 혐오표현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o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심의 대상 게시물은 제9조 제1항의 혐오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용된 단어의 의미나 단어의 사용 맥락을 고려할 때 심의 대상 게시물은 단순히 언사가 거칠다거나 품위와 격조를 잃은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서, 혐오표현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제11조 제3항의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비하·조롱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4. 결론

위와 같은 이유에서 요청인의 심의 요청 대상 게시물은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나 회원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11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혐오표현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심의번호 2025심혐-1-5
요 청 인 회원사
결 정 일 2025. 12. 1.

주 문

해당없음.

이 유

1. 요청의 요지

혐오표현의 사용과 유통을 억제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를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운영하는 회원사는 뉴스 게시물의 댓글인 “이럴시간 있으면 .. 화교 중국사람 한국에서..추방 방법이나 생각해... 화교 중국사람 대통령 투표권 주는 나라 .....어디있냐..”가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의를 요청했다.

2. 관련 규정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2023. 4. 27.제정, 2024. 2. 27.개정) 제2조, 제9조

제2조 (정의) ①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혐오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이하 ‘특정 속성’이라 한다)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2. 차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
3.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에 대한 표현
4.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자고 주장하는 표현
5.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해를 입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표현
② 전항에 규정되지 않은 용어의 정의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과 해석을 참조한다.

제9조 (혐오표현에 대한 판단) ① 혐오표현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2.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3.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② 제1항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한다.

3. 판단

1) 관련 법리의 검토

o 대한민국헌법 제21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자아의 실현과 진리의 발견에 기여한다. 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을 통해 민주적 정치 질서를 형성·유지해 나가야 하므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 최대한 보장을 받아야 한다.

o '혐오표현'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는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이라는 이유만으로 표현의 자유 보호영역에서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혐오적 표현도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되,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헌재 2019. 11. 28. 2017헌마1356). 우리나라에는 혐오표현에 대해 직접적인 형사처벌 조항이 따로 존재하지 않은데, 혐오표현 중에는 특정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여 형법상 모욕죄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하는 것이 적지 않다. 이러한 범위 내에서는 현실적으로 모욕죄가 혐오표현에 대한 일종의 제한, 규제로 기능하는 측면이 있다(헌재 2020. 12. 23. 2017헌바456 등;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7도19229 판결).

o '인종·국가'를 이유로 한 차별과 관련하여 「세계인권선언」 제2조 및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2조,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1조 등은 인종에 따른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2조는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더 나아가 개인이 속한 국가 또는 영토가 독립국, 신탁통치지역, 비자치지역이거나 또는 주권에 대한 여타의 제약을 받느냐에 관계없이, 그 국가 또는 영토의 정치적, 법적 또는 국제적 지위에 근거하여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제1조 1.은 "인종차별"이라 함은 인종, 피부색, 가문 또는 민족이나 종족의 기원에 근거를 둔 어떠한 구별, 배척, 제한 또는 우선권을 말하며 이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는 기타 어떠한 공공생활의 분야에 있어서든 평등하게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인정, 향유 또는 행사를 무효화시키거나 침해하는 목적 또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조 1.은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토 내에 있으며, 그 관할권 하에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하여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존중하고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o '인종·국가'와 관련한 혐오표현 게시물의 처리에 있어서는, 현행법상 모욕죄 등의 구성요건

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례를 제외한다면 혐오표현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 또 혐오적이라는 이유로 표현행위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는 점, 혐오표현의 해악을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는 것은 중장기적인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점, 인터넷상의 혐오표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와 정보통신망 사업자의 태도와 책임 의식이 중요하다는 점, 규제되는 혐오표현의 범위를 확대하고 제재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과 혐오 표현으로 판단되는 범위를 좁히고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넓혀 보장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 간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판단

o「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은 특정 집단이 혐오표현으로 인해 차별·배제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보장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동시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한 비판적 표현을 통해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는 경우에도 무조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제3조).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을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으로 규정하면서(제2조 제1항 제1호), '혐오표현'에 해당하려면 첫째,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둘째,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셋째,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제9조 제1항). 이러한 판단을 할 때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하도록 했다(제9조 제2항).

o「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속성'을 판단할 때는 해당 속성의 유형, 해당 속성 집단의 규모, 해당 속성 집단이 사회적 소수이거나 약자인지 아니면 사회적 다수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이나 욕설, 비속어 등에 대해 정보통신망사업자는 약관 등 정책에 따라 일정한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 '단어가 쓰인 맥락'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단어가 쓰인 문맥뿐만 아니라 게시글 작성의 목적과 용도, 서비스나 게시 공간의 특성, 초래되는 위험, 게시자의 속성,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기존의 유사한 결정에서 해석하고 적용한 기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o 심의대상 게시물은 언론 기사 "◇◇, '○○○ 무혐의'에 "△△△ 명품백은 수사도 없이 종결… ▽▽▽▽, 사죄하라"의 댓글이다. 해당 뉴스는 □□□ 전 대통령 부인 ○○○ 여사의 인도 외유성 출장·샤넬 재킷 소장 의혹 사건이 최종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이 나자 ◇◇◇이 ▽▽▽▽측에 정치 보복 수사를 중단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한 내용의 기사이다. 심의대상 게시물은 이러한 기사에 대한 댓글로, "이럴시간 있으면 .. 화교 중국사람 한국에서..추방 방법이나 생각해... 화교 중국사람 대통령 투표권 주는 나라 .....어디있냐.."라는 표현이다. 이 댓글은 해당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나 '추방'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 가이드라인 제2조 4항의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자고 주장하는 표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댓글의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해 보면 "추방 방법을 생각해"라는 표현에서 표현물 게시자 개인의 의견이나 소망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의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한 차별의 정당화·조장·강화표현이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혐오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위와 같은 이유에서 요청인의 심의 요청 대상 게시물은「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제9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혐오표현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심의번호 2025심혐-1-6
요 청 인 회원사
결 정 일 2025. 12. 1.

주 문

해당없음.

이 유

1. 요청의 요지

혐오표현의 사용과 유통을 억제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를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운영하는 회원사는 게시물 “이스라엘 힘내라 이슬람은 악마들이다 한국에서도 이슬람을 추방해라”라는 표현이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의를 요청했다.

2. 관련 규정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2023. 4. 27.제정, 2024. 2. 27.개정) 제2조, 제9조

제2조 (정의) ①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혐오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이하 ‘특정 속성’이라 한다)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2. 차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
3.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에 대한 표현
4.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자고 주장하는 표현
5.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해를 입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표현
② 전항에 규정되지 않은 용어의 정의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과 해석을 참조한다.

제9조 (혐오표현에 대한 판단) ① 혐오표현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2.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3.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② 제1항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한다.

3. 판단

1) 관련 법리의 검토

o 대한민국헌법 제20조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자신의 종교를 널리 확장하고 인정받으려는 표현이나 다른 종교에 대한 비판적 표현 역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한국의 사법부는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볼 때, 다른 종교 또는 종교집단을 비판할 자유 역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경우에는 그 밖의 일반적인 언론·출판에 비해 고도의 보장을 받는다고 판시해 왔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46, 19253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87903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도5924 판결). 대법원에 따르면 종교에 대한 비판은 어느 정도 편견과 자극적인 표현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고, 타 종교의 신앙 대상에 대한 모욕이 곧장 그 신앙의 대상을 신봉하는 종교단체나 신도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니다. 또 종교적 목적을 위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종교의 신앙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거나 다소 모욕적이고 불쾌하게 느껴지는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그것이 해당 종교를 신봉하는 신도들에 대한 증오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거나, 그 자체로 폭행·협박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정도가 아닌 이상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o ‘혐오표현’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는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이라는 이유만으로 표현의 자유 보호영역에서 애당초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혐오적 표현도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되,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헌재 2019. 11. 28. 2017헌마1356). 우리나라에는 혐오표현에 대해 직접적인 형사처벌 조항이 따로 존재하지 않은데, 혐오표현 중에는 특정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여 형법상 모욕죄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하는 것이 적지 않다. 이러한 범위 내에서는 현실적으로 모욕죄가 혐오표현에 대한 일종의 제한, 규제로 기능하는 측면이 있다(헌재 2020. 12. 23. 2017헌바456 등;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7도19229 판결).

o 표현의 자유는 자아의 실현과 진리의 발견에 기여한다. 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을 통해 민주적 정치 질서를 형성·유지해 나가야 하므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 최대한 보장을 받아야 한다. 또 종교적 표현의 자유는 다른 영역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보호를 받아야 하고, 나아가 비판의 대상이 된 종교집단이 우리 사회에서 다수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 그 종교에 대한 다소 거칠거나 모멸적인 표현이라도 가능한 이를 폭넓게 수용하고 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종교와 관련한 표현이라

고 하더라도 개인의 자아실현이나 진리 발견, 민주주의의 여론 형성에 기여하지 못하고 오로지 특정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이유로 특정한 대상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특정한 대상에 대한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까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o 종교와 관련한 혐오표현 게시물의 처리에 있어서는, 모욕죄 등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례를 제외한다면 혐오표현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 또 혐오적이라는 이유로 표현행위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는 점, 혐오표현의 해악을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는 것은 중장기적인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점, 인터넷상의 혐오표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와 정보통신망 사업자의 태도와 책임 의식이 중요하다는 점, 규제되는 혐오표현의 범위를 확대하고 제재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과 혐오 표현으로 판단되는 범위를 좁히고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넓혀 보장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 간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판단

o「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은 특정 집단이 혐오표현으로 인해 차별·배제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보장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동시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한 비판적 표현을 통해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는 경우에도 무조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제3조).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을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으로 규정하면서(제2조 제1항 제1호), '혐오표현'에 해당하려면 첫째,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둘째,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셋째,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제9조 제1항). 이러한 판단을 할 때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하도록 했다(제9조 제2항).

o「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속성'을 판단할 때는 해당 속성의 유형, 해당 속성 집단의 규모, 해당 속성 집단이 사회적 소수이거나 약자인지 아니면 사회적 다수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이나 욕설, 비속어 등에 대해 정보통신망사업자는 약관 등 정책에 따라 일정한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 '단어가 쓰인 맥락'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단어가 쓰인 문맥뿐만 아니라 게시글 작성의 목적과 용도, 서비스나 게시 공간의 특성, 초래되는 위험, 게시자의 속성,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기존의 유사한 결정에서 해석하고 적용한 기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o 심의대상 게시물의 내용은 "이스라엘 힘내라 이슬람은 악마들이다 한국에서도 이슬람을 추방해라"로 개인적인 의견을 기술한 것으로,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거나 폭력을 선동한다고 보기 어렵다. 해당 안건들의 경우 혐오표현이 되기 위해서는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이어야 되어야 한다. 또한 차별 및 폭력 역시 단순히 차별이나 폭력적 표현을 한 것이 아닌 차별 및 폭력을 정당화, 조장, 강화 하는 것이어야 하지만 본 게시물

의 내용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게시물의 ‘추방’이라는 단어는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그에 준하는 행동을 했을 경우 추방하는 제도가 있으며, 그런 범죄 사실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고 그에 대한 공포심 등에 따라 추방을 시켜달라는 표현은 ‘의견’에 해당한다. 이에 추방이라는 단어가 가진 객관성을 고려해 ‘해당없음’으로 판단한다.

o 심의 대상 게시물에 대해 일부 위원은 이 표현이 특정속성(종교)에 기반하여 특정집단(이슬람교도)을 악마로 규정하고 한국에서 추방하자는 내용으로 이슬람교도들의 차별을 정당화, 조장, 강화하는 표현이자 그들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자는 표현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4. 결론

위와 같은 이유에서 요청인의 심의 요청 대상 게시물은「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제9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혐오표현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심의번호 2025심혐-1-7
요 청 인 회원사
결 정 일 2025. 12. 1.

주 문

해당없음.

이 유

1. 요청의 요지

혐오표현의 사용과 유통을 억제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를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운영하는 회원사는 게시물 “이슬람종교는 깡패 종교고 테러 종교다 이것들 처음 불쌍한척 하다 자기 패거리들 숫자 많아지면 바로 본색 나온다 절대 이것들 활개 못치게 해야 한다 대구 가보면 이슬람 성전 못짓게 하니 무슬림들 난리치고 다닌단다 무슬림들은 이민 난민 절대 받지 마라” 라는 표현이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의를 요청했다.

2. 관련 규정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2023. 4. 27.제정, 2024. 2. 27.개정) 제2조, 제9조

제2조 (정의) ①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혐오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이하 ‘특정 속성’이라 한다)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2. 차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
3.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에 대한 표현
4.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자고 주장하는 표현

5.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해를 입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표현
② 전항에 규정되지 않은 용어의 정의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과 해석을 참조한다.

제9조 (혐오표현에 대한 판단) ① 혐오표현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2.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3.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② 제1항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한다.

3. 판단

1) 관련 법리의 검토

o 대한민국헌법 제20조는 종교의 자유, 제21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적인 기본권 보장을 바탕으로 자신의 종교를 널리 확장하고 인정받으려는 표현이나 다른 종교에 대한 비판적 표현 역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한국의 사법부는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볼 때, 다른 종교 또는 종교집단을 비판할 자유 역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경우에는 그 밖의 일반적인 언론·출판에 비해 고도의 보장을 받는다고 판시해 왔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46, 19253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87903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도5924 판결). 대법원에 따르면 종교에 대한 비판은 어느 정도 편견과 자극적인 표현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고, 타 종교의 신앙 대상에 대한 모욕이 곧장 그 신앙의 대상을 신봉하는 종교단체나 신도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니다. 또 종교적 목적을 위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종교의 신앙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거나 다소 모욕적이고 불쾌하게 느껴지는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그것이 해당 종교를 신봉하는 신도들에 대한 증오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거나, 그 자체로 폭행·협박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정도가 아닌 이상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o ‘혐오표현’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는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이라는 이유만으로 표현의 자유 보호영역에서 애당초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혐오적 표현도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되,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헌재 2019. 11. 28. 2017헌마1356). 우리나라에는 혐오표현에 대해 직접적인 형사처벌 조항이 따로 존재하지 않은데, 혐오표현 중에는 특정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여 형법상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도 적지 않다. 이러한 범위 내에서는 현실적으로 모욕죄가 혐오표현에 대한 일종의 제한, 규제로 기능하는 측면이 있다(헌재 2020. 12. 23. 2017헌바456 등;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7도19229 판결).

o 표현의 자유는 자아의 실현과 진리의 발견에 기여한다. 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을 통해 민주적 정치 질서를 형성·유지해 나가야 하므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 최대한 보장을 받아야 한다. 또 종교적 표현의 자유는 다른 영역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보호를 받아야 하고, 나아가 비판의 대상이 된 종교집단이 우리 사회에서 다수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 그 종교에 대한 다소 거칠거나 모멸적인 표현이라도 가능한 이를 폭넓게 수용하고 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종교와 관련한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자아실현이나 진리 발견, 민주주의의 여론 형성에 기여하지 못하고 오로지 특정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이유로 특정한 대상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특정한 대상에 대한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까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o 종교와 관련한 혐오표현 게시물의 처리에 있어서는, 모욕죄 등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례를 제외한다면 혐오표현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 또 혐오적이라는 이유로 표현행위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는 점, 혐오표현의 해악을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는 것은 중장기적인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점, 인터넷상의 혐오표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와 정보통신망 사업자의 태도와 책임 의식이 중요하다는 점, 규제되는 혐오표현의 범위를 확대하고 제재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과 혐오 표현으로 판단되는 범위를 좁히고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넓혀 보장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 간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판단

o「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은 특정 집단이 혐오표현으로 인해 차별·배제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보장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동시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한 비판적 표현을 통해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는 경우에도 무조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제3조).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을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으로 규정하면서(제2조 제1항 제1호), '혐오표현'에 해당하려면 첫째,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둘째,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셋째,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제9조 제1항). 이러한 판단을 할 때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하도록 했다(제9조 제2항). 한편,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해 비하·조롱하는 표현에 대해 회원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11조 제3항).

o「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속성'을 판단할 때는 해당 속성의 유형, 해당 속성 집단의 규모, 해당 속성 집단이 사회적 소수이거나 약자인지 아니면 사회적 다수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이나 욕설, 비속어 등에 대해 정보통신망사업자는 약관 등 정책에 따라 일정한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제11조 제3항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도 문제가 된 게시물의 내용과 전체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소 거친 언사나 욕설, 품위나 격조를 잃은 표현의 수준을 넘어 오로지 특정 속성 집단이나 구성원을 비하·조롱하기 위하여 작성된 때로 그 적용이 한정되어야 한다. 또 '단어가 쓰인 맥락'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단어가 쓰인 문맥뿐만 아니라

게시글 작성의 목적과 용도, 서비스나 게시 공간의 특성, 초래되는 위험, 게시자의 속성,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기존의 유사한 결정에서 해석하고 적용한 기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o 심의대상 게시물의 내용은 “이슬람종교는 깡패 종교고 테러 종교다 이것들 처음 불쌍한척하다 자기 패거리들 숫자 많아지면 바로 본색 나온다 절대 이것들 활개 못치게 해야 한다 대구 가보면 이슬람 성전 못짓게 하니 무슬림들 난리치고 다닌단다 무슬림들은 이민 난민 절대 받지 마라”로 개인적인 의견을 기술한 것으로,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하거나 폭력을 선동한다고 보기 어렵다. 해당 안건들의 경우 혐오표현이 되기 위해서는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이어야 되어야 한다. 또한 차별 및 폭력 역시 단순히 차별이나 폭력적 표현을 한 것이 아닌 차별 및 폭력을 정당화, 조장, 강화 하는 것이어야 하지만 본 게시물의 내용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게시물의 ‘무슬림들은 이민 난민 절대 받지 마라’는 내용 역시 차별적 표현에 대한 의견표명일 뿐 특정 민족에 대한 차별 정당화 및 조장 등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극단적인 혐오표현에 이르지 못한다고 판단한다.

o 심의 대상 게시물에 대해 일부 위원은 이 표현이 특정속성(종교)에 기반하여 특정집단(이슬람교도)을 깡패, 테러집단으로 규정하고 우리 사회에서 배제하자는 주장으로 이슬람교도들의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표현이자 그들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자는 표현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4. 결론

위와 같은 이유에서 요청인의 심의 요청 대상 게시물은「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제9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혐오표현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심의번호 2025심혐-1-8
요 청 인 회원사
결 정 일 2025. 12. 1.

주 문

혐오표현에 해당함.

이 유

1. 요청의 요지

혐오표현의 사용과 유통을 억제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를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운영하는 회원사는 게시물 “개슬람은 인종청소가 필요하다”가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의를 요청했다.

2. 관련 규정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2023. 4. 27.제정, 2024. 2. 27.개정) 제2조, 제9조

제2조 (정의) ①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혐오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이하 ‘특정 속성’이라 한다)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2. 차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
3.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에 대한 표현
4.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자고 주장하는 표현
5.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해를 입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표현
② 전항에 규정되지 않은 용어의 정의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과 해석을 참조한다.

제9조 (혐오표현에 대한 판단) ① 혐오표현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2.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3.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② 제1항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한다.

3. 판단

1) 관련 법리의 검토

o 대한민국헌법 제20조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국교는 인정되지 않는다. 조사회사 갤럽의 <한국인의 종교 1984-2021 (1) 종교 현황>(조사일 2021. 3. 18.~ 2021. 4. 7.)에 따르면 2021년 현재 '종교가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40%였는데, 종교 분포는 개신교 17%, 불교 16%, 천주교 6%이다(http://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208).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 2022년 종교인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개신교 20%, 불교 17%, 천주교 11%, 기타 종교 2% 그리고 '믿는 종교가 없다'는 응답은 51%였다(https://hrcopinion.co.kr/archives/25186).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2015 인구주택총조사: 종교인구>에 따르면 '종교가 있다'는 21,553,674명으로 비율은 43.9%였다. 불교 15.5%(7,619,332명), 개신교 19.7%(9,675,761명), 천주교 7.9%(3,890,311명), 원불교 0.2%(84,141명), 유교 0.2%(75,703명), 대순진리회 0.1%(41,176명), 대종교 0.01%(3,101명), 기타 0.2%(98,185명)였다(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PM1502&vw_cd=&list_id=&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K1).

o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실제 다양한 종교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서 자신의 종교를 널리 확장하고 인정받으려는 표현이나 다른 종교에 대한 비판적 표현 역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한국의 사법부는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볼 때, 다른 종교 또는 종교집단을 비판할 자유 역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경우에는 그 밖의 일반적인 언론·출판에 비해 고도의 보장을 받는다고 판시해 왔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46, 19253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87903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도5924 판결). 대법원에 따르면 종교에 대한 비판은 어느 정도 편견과 자극적인 표현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고, 타 종교의 신앙 대상에 대한 모욕이 곧장 그 신앙의 대상을 신봉하는 종교단체나 신도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니다. 또 종교적 목적을 위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종교의 신앙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거나 다소 모욕적이고 불쾌하게 느껴지는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그것이 해당 종교를 신봉하는 신도들에 대한 증오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거나, 그 자체로 폭행·협박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정도가 아닌 이상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o '혐오표현'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는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이라는 이유만으로 표현의 자유 보호영역에서 애당초 배제된

다고 볼 수 없다. 혐오적 표현도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되,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헌재 2019. 11. 28. 2017헌마1356). 우리나라에는 혐오표현에 대해 직접적인 형사처벌 조항이 따로 존재하지 않은데, 혐오표현 중에는 특정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여 형법상 모욕죄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하는 것이 적지 않다. 이러한 범위 내에서는 현실적으로 모욕죄가 혐오표현에 대한 일종의 제한, 규제로 기능하는 측면이 있다(헌재 2020. 12. 23. 2017헌바456 등;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7도19229 판결).

o 표현의 자유는 자아의 실현과 진리의 발견에 기여한다. 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을 통해 민주적 정치 질서를 형성·유지해 나가야 하므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 최대한 보장을 받아야 한다. 또 종교적 표현의 자유는 다른 영역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보호를 받아야 하고, 나아가 비판의 대상이 된 종교집단이 우리 사회에서 다수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 그 종교에 대한 다소 거칠거나 모멸적인 표현이라도 가능한 이를 폭넓게 수용하고 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종교와 관련한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자아실현이나 진리 발견, 민주주의의 여론 형성에 기여하지 못하고 오로지 특정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이유로 특정한 대상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특정한 대상에 대한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까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o 종교와 관련한 혐오표현 게시물의 처리에 있어서는, 모욕죄 등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례를 제외한다면 혐오표현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 또 혐오적이라는 이유로 표현행위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는 점, 혐오표현의 해악을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는 것은 중장기적인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점, 인터넷상의 혐오표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와 정보통신망 사업자의 태도와 책임 의식이 중요하다는 점, 규제되는 혐오표현의 범위를 확대하고 제재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과 혐오 표현으로 판단되는 범위를 좁히고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넓혀 보장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 간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판단

o「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은 특정 집단이 혐오표현으로 인해 차별·배제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보장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동시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한 비판적 표현을 통해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는 경우에도 무조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제3조).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을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으로 규정하면서(제2조 제1항 제1호), '혐오표현'에 해당하려면 첫째,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둘째,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셋째,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제9조 제1항). 이러한 판단을 할 때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하도록 했다(제9조 제2항).

o「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속성’을 판단할 때는 해당 속성의 유형, 해당 속성 집단의 규모, 해당 속성 집단이 사회적 소수이거나 약자인지 아니면 사회적 다수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이나 욕설, 비속어 등에 대해 정보통신망사업자는 약관 등 정책에 따라 일정한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 ‘단어가 쓰인 맥락’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단어가 쓰인 문맥뿐만 아니라 게시글 작성의 목적과 용도, 서비스나 게시 공간의 특성, 초래되는 위험, 게시자의 속성,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기존의 유사한 결정에서 해석하고 적용한 기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o 심의대상 게시물의 내용은 “개슬람은 인종청소가 필요하다”로 ‘인종청소’라는 내용이 들어 있어 위원 7인 전원이 ‘혐오표현’에 해당함으로 판단하였다. 인종청소라는 단어는 역사적으로 나치정권의 유대인 학살 등에 쓰이는 단어이며, 그 자체로 폭력을 선동하는 의미를 내포해 금기시되는 단어로 쓰인다. 즉 이 단어는 특정속성을 기반으로 한 특정집단에 대해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이며, 단어의 사용 맥락 자체가 폭력을 선동하기 때문에 이에 해당 내용은 혐오표현으로 판단한다.

4. 결론

위와 같은 이유에서 요청인의 심의 요청 대상 게시물은「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제9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혐오표현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심의번호 2025심혐-1-9
요 청 인 회원사
결 정 일 2025. 12. 1.

주 문

해당없음.

이 유

1. 요청의 요지

회원사는 게시물 “개독들 다 없애버리고 싶다 진심ㅋㅋㅋㅋㅋ.우리나라는 개독만 사라지면 됨”이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의를 요청했다.

2. 관련 규정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2023. 4. 27.제정, 2024. 2. 27.개정) 제2조, 제9조

제2조 (정의) ①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혐오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이하 ‘특정 속성’이라 한다)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2. 차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
3.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에 대한 표현
4.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자고 주장하는 표현
5.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해를 입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표현
② 전항에 규정되지 않은 용어의 정의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과 해석을 참조한다.

제9조 (혐오표현에 대한 판단) ① 혐오표현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2.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3.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② 제1항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한다.

3. 판단

1) 관련 법리의 검토

o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실제 다양한 종교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서 자신의 종교를 널리 확장하고 인정받으려는 표현이나 다른 종교에 대한 비판적 표현 역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한국의 사법부는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볼 때, 다른 종교 또는 종교집단을 비판할 자유 역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경우에는 그 밖의 일반적인 언론·출판에 비해 고도의 보장을 받는다고 판시해 왔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46, 19253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87903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도5924 판결). 대법원에 따르면 종교에 대한 비판은 어느 정도 편견과 자극적인 표현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고, 타 종교의 신앙 대상에 대한 모욕이 곧장 그 신앙의 대상을 신봉하는 종교단체나 신도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니다. 또 종교적 목적을 위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종교의 신앙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거나 다소 모욕적이고 불쾌하게 느껴지는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그것이 해당 종교를 신봉하는 신도들에 대한 증오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거나, 그 자체로 폭행·협박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정도가 아닌 이상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o ‘혐오표현’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는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이라는 이유만으로 표현의 자유 보호영역에서 애당초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혐오적 표현도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되,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헌재 2019. 11. 28. 2017헌마1356). 우리나라에는 혐오표현에 대해 직접적인 형사처벌 조항이 따로 존재하지 않은데, 혐오표현 중에는 특정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여 형법상 모욕죄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하는 것이 적지 않다. 이러한 범위 내에서는 현실적으로 모욕죄가 혐오표현에 대한 일종의 제한, 규제로 기능하는 측면이 있다(헌재 2020. 12. 23. 2017헌바456 등;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7도19229 판결).

o 표현의 자유는 자아의 실현과 진리의 발견에 기여한다. 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을 통해 민주적 정치 질서를 형성·유지해 나가야 하므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 최대한 보장을 받아야 한다. 또 종교적 표현의 자유는 다른 영역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보호를 받아야 하고, 나아가 비판의 대상이 된 종교집단이 우리 사회에서 다수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 그 종교에 대한 다소 거칠거나 모멸적인 표현이라도 가능

한 이를 폭넓게 수용하고 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종교와 관련한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자아실현이나 진리 발견, 민주주의의 여론 형성에 기여하지 못하고 오로지 특정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이유로 특정한 대상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특정한 대상에 대한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까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o 종교와 관련한 혐오표현 게시물의 처리에 있어서는, 모욕죄 등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례를 제외한다면 혐오표현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 또 혐오적이라는 이유로 표현행위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는 점, 혐오표현의 해악을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는 것은 중장기적인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점, 인터넷상의 혐오표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와 정보통신망 사업자의 태도와 책임 의식이 중요하다는 점, 규제되는 혐오표현의 범위를 확대하고 제재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과 혐오 표현으로 판단되는 범위를 좁히고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넓혀 보장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 간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판단

o「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은 특정 집단이 혐오표현으로 인해 차별·배제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보장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동시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한 비판적 표현을 통해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는 경우에도 무조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제3조).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을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으로 규정하면서(제2조 제1항 제1호), '혐오표현'에 해당하려면 첫째,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둘째,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셋째,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제9조 제1항). 이러한 판단을 할 때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하도록 했다(제9조 제2항).

o「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속성'을 판단할 때는 해당 속성의 유형, 해당 속성 집단의 규모, 해당 속성 집단이 사회적 소수이거나 약자인지 아니면 사회적 다수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이나 욕설, 비속어 등에 대해 정보통신망사업자는 약관 등 정책에 따라 일정한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 '단어가 쓰인 맥락'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단어가 쓰인 문맥뿐만 아니라 게시글 작성의 목적과 용도, 서비스나 게시 공간의 특성, 초래되는 위험, 게시자의 속성,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기존의 유사한 결정에서 해석하고 적용한 기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o 심의대상 게시물은 "개독들 다 없애버리고 싶다 진심ㅋㅋㅋㅋㅋ우리나라는 개독만 사라지면 됨"이다. 게시물의 표현 중 '개독들 다 없애버리고 싶다'는 특정 종교에 대한 폭력성이 나타나 있지만 '~하고 싶다' 등의 표현을 통해 다소 폭력성이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자기 의견에 가깝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런 표현들까지 모두 폭력을 선동하는 등 극단적인 혐오표현

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다.

o 심의 대상 게시물에 대해 일부 위원은 게시물이 ‘없애야 한다’거나 ‘사라져야 한다’는 표현은 대표적인 특정집단에 대해 분리·구별·제한·거부하자는 표현에 해당해 혐오표현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4. 결론

위와 같은 이유에서 요청인의 심의 요청 대상 게시물은「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제9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혐오표현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심의번호 2025심혐-1-10
요 청 인 회원사
결 정 일 2025. 12. 1.

주 문

제9조 제1항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회원사에게 제11조 제3항의 조치 여부에 대한 검토를 권고함.

이 유

1. 요청의 요지

회원사는 게시물 “개독 박멸만이 이 나라가 살 길이다.”표현이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의를 요청했다.

2. 관련 규정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2023. 4. 27.제정, 2024. 2. 27.개정) 제2조, 제9조, 제11조

제2조 (정의) ①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혐오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이하 ‘특정 속성’이라 한다)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2. 차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
3.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에 대한 표현
4.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자고 주장하는 표현
5.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해를 입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표현
② 전항에 규정되지 않은 용어의 정의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과 해석을 참조한다.

제9조 (혐오표현에 대한 판단) ① 혐오표현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2.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3.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② 제1항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한다.

제11조 (혐오표현에 대한 조치) ① 회원사는 혐오표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혐오표현 조치”라 한다)를 취할 수 있다.
1. 삭제 조치
2. 해당 표현을 가리거나 노출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
3. 경고 문구, 이용자 주의 문구 등을 표기하는 조치
4. 그 밖에 혐오표현을 제한하거나 그에 준하는 조치
② 회원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혐오표현 조치를 한 후 그 조치 사실을 지체 없이 정보 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 게재자의 사정으로 조치 사실을 알리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나, 회원사별 정책에 따라 통보 대상이 아닌 경우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회원사는 제9조 제1항에 따른 혐오표현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비하·조롱하는 표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판단

1) 관련 법리의 검토

o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실제 다양한 종교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에서 자신의 종교를 널리 확장하고 인정받으려는 표현이나 다른 종교에 대한 비판적 표현 역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한국의 사법부는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볼 때, 다른 종교 또는 종교집단을 비판할 자유 역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경우에는 그 밖의 일반적인 언론·출판에 비해 고도의 보장을 받는다고 판시해 왔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46, 19253 판결;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다87903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도5924 판결). 대법원에 따르면 종교에 대한 비판은 어느 정도 편견과 자극적인 표현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고, 타 종교의 신앙 대상에 대한 모욕이 곧장 그 신앙의 대상을 신봉하는 종교단체나 신도들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니다. 또 종교적 목적을 위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종교의 신앙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거나 다소 모욕적이고 불쾌하게 느껴지는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그것이 해당 종교를 신봉하는 신도들에 대한 증오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거나, 그 자체로 폭행·협박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정도가 아닌 이상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도13718 판결).

o ‘혐오표현’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포함되는 것인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이라는 이유만으로 표현의 자유 보호영역에서 애당초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혐오적 표현도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해당하되,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헌재 2019. 11. 28. 2017헌마1356). 우리나라에는 혐오표현에 대해 직접적인 형사처벌 조항이 따로 존재하지 않은데, 혐오표현 중에는 특

정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여 형법상 모욕죄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하는 것이 적지 않다. 이러한 범위 내에서는 현실적으로 모욕죄가 혐오표현에 대한 일종의 제한, 규제로 기능하는 측면이 있다(헌재 2020. 12. 23. 2017헌바456 등;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17도19229 판결).

o 표현의 자유는 자아의 실현과 진리의 발견에 기여한다. 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을 통해 민주적 정치 질서를 형성·유지해 나가야 하므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 최대한 보장을 받아야 한다. 또 종교적 표현의 자유는 다른 영역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보호를 받아야 하고, 나아가 비판의 대상이 된 종교집단이 우리 사회에서 다수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 그 종교에 대한 다소 거칠거나 모멸적인 표현이라도 가능한 이를 폭넓게 수용하고 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종교와 관련한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자아실현이나 진리 발견, 민주주의의 여론 형성에 기여하지 못하고 오로지 특정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이유로 특정한 대상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특정한 대상에 대한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까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o 종교와 관련한 혐오표현 게시물의 처리에 있어서는, 모욕죄 등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례를 제외한다면 혐오표현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 또 혐오적이라는 이유로 표현행위를 형사적으로 처벌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는 점, 혐오표현의 해악을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는 것은 중장기적인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점, 인터넷상의 혐오표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와 정보통신망 사업자의 태도와 책임 의식이 중요하다는 점, 규제되는 혐오표현의 범위를 확대하고 제재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과 혐오 표현으로 판단되는 범위를 좁히고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넓혀 보장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 간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판단

o「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은 특정 집단이 혐오표현으로 인해 차별·배제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보장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동시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한 비판적 표현을 통해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는 경우에도 무조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제3조).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을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으로 규정하면서(제2조 제1항 제1호), '혐오표현'에 해당하려면 첫째,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둘째,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셋째,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제9조 제1항). 이러한 판단을 할 때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하도록 했다(제9조 제2항).

o「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속성'을 판단할 때는 해당 속성의 유형, 해당 속성 집단의 규모, 해당 속성 집단이 사회적 소수이거나 약자인지 아니면 사회적 다수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이나 욕

설, 비속어 등에 대해 정보통신망사업자는 약관 등 정책에 따라 일정한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 '단어가 쓰인 맥락'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단어가 쓰인 문맥뿐만 아니라 게시글 작성의 목적과 용도, 서비스나 게시 공간의 특성, 초래되는 위험, 게시자의 속성,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기존의 유사한 결정에서 해석하고 적용한 기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o 다만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즉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해 비하·조롱하는 표현에(이하 "비하·조롱 표현")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제11조 제3항). 혐오표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 가이드라인에서 이러한 "비하·조롱 표현"을 적시하고 각 개별 회원사가 자율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둔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이라는 공론의 장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혐오표현을 명확히 해석하기 위함이다. 종종 단순한 "비하·조롱 표현"을 "혐오표현"으로 오인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시도가 사회 각계에서 존재한다. 각종 단체는 자신들에 대한 단순한 비판의 의미로 표현되는 "비하·조롱 표현"에 대하여도 혐오표현임을 주장하며 삭제 등 엄격한 조치를 요구하나, 이러한 요구가 명확한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수용될 경우 일반시민의 표현의 자유는 불합리한 제한을 받으며 우리 사회 공론의 장으로써 인터넷이 가지는 의미와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 둘째,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각 회원사 정책의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함이다. 본 가이드라인에 의해 혐오표현으로 결정될 경우 모든 회원사는 해당 표현에 대하여 제11조 제1항의 각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혐오표현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해당 회원사가 지향하는 사업의 모습과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 표현에 대하여는 각 회원사 의 다양한 정책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혐오표현에 이르지 아니하나 표현의 수용자 입장에서 건전하지 못한 표현에 대하여 회원사 자율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셋째, 혐오표현에 이르지 아니한 "비하·조롱 표현"이라 할지라도 그 판단에 있어서 회원사 일방의 결정에 의하는 것보다는 제3의 전문적 독립기관에 의하는 것이 회원사의 영업의 자유와 일반 시민의 표현의 자유 간의 충돌을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KISO는 회원사로 구성되었지만 각 회원사의 이해관계가 다양한 바 특정 회원사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해 인터넷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설립된 독립적 전문 자율정책기구다. 따라서 혐오표현에 이르지 못한 "비하·조롱 표현"이라 할지라도 그 여부가 KISO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짐으로써 법익충돌의 조화에 기여할 수 있다.

o 심의대상 게시물은 "개독 박멸만이 이 나라가 살 길이다."에서 '박멸'이라는 단어 자체는 바퀴벌레 등의 해충에 사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혐오적인 표현에 해당 할 수 있다. 다만, '박멸'이라는 표현을 넣어 사용한 내용이 '~이 나라가 살길이다'라는 표현이 더해져 혐오적인 느낌이 상당히 완화되었다고 판단한다. 또한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이자는 폭력적인 의미가 담긴 것이 아닌 그 종교 자체에 대한 본인의 의사 표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위원 2인은 박멸이라는 표현은 인간존엄성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자 특정집단을 멸종시켜야 한다는 의미로 대표적인 폭력 선전·선동하는 표현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이 게시물을 '제11조 제3항(비하·조롱)'으로 판단한다.

4. 결론

위와 같은 이유에서 요청인의 심의 요청 대상 게시물은「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제9조 제1항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회원사에게 제11조 제3항의 조치 여부에 대한 검토를 권고한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혐오표현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심의번호 2025심혐-1-11
요 청 인 회원사
결 정 일 2025. 12. 1.

주 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나, 회원사에게 제11조 제3항의 조치 여부에 대한 검토를 권고함.

이 유

1. 요청의 요지

혐오표현의 사용과 유통을 억제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를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운영하는 회원사는 뉴스 게시물의 댓글 “동성애 성전화 환잔가 또 한명 죽였네. 이래서 동성병은 조형병과 같은 정신병이지.”가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의를 요청했다.

2. 관련 규정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2023. 4. 27.제정, 2024. 2. 27.개정) 제2조, 제9조, 제11조

제2조 (정의) ①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혐오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이하 ‘특정 속성’이라 한다)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2. 차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
3.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에 대한 표현
4.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자고 주장하는 표현
5.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해를 입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표현
② 전항에 규정되지 않은 용어의 정의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과 해석을 참조한다.

제9조 (혐오표현에 대한 판단) ① 혐오표현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2.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3.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② 제1항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한다.

제11조 (혐오표현에 대한 조치) ① 회원사는 혐오표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혐오표현 조치"라 한다)를 취할 수 있다.
1. 삭제 조치
2. 해당 표현을 가리거나 노출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
3. 경고 문구, 이용자 주의 문구 등을 표기하는 조치
4. 그 밖에 혐오표현을 제한하거나 그에 준하는 조치
② 회원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혐오표현 조치를 한 후 그 조치 사실을 지체 없이 정보 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 게재자의 사정으로 조치 사실을 알리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나, 회원사별 정책에 따라 통보 대상이 아닌 경우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회원사는 제9조 제1항에 따른 혐오표현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비하·조롱하는 표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판단

o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모든 시민에게 명시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자아실현과 진리 발견에 기여한다. 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에 의해 다수 시민의 의견을 집약시켜 민주적 정치질서를 형성·유지하도록 하므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 최대한 보장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의 보호 범위에 해당하는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자아실현이나 진리 발견, 민주주의의 여론 형성에 기여하지 못하고 오로지 특정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이유로 특정한 대상에 대한 차별을 조장· 강화하거나, 특정한 대상에 대한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o「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21조는 제1항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제4항에서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 일반권고 제35호 >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General recommendation No. 35 "Combating racist hate speech"(2013)를 통하여 혐오표현은 "인간의 존엄 및 평등이라는 핵심적인 인권원칙을 거부하는 것"이며,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이 아니라 일정한 제한이 부과될 수 있고, 평등권 및 차별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와 상호 지지하는 인권의 항목임을 확인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21진정0140600). 따라서 시민의 표현 중 혐오표현은「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제한될

수 있는 표현에 해당한다(2023심-혐-1-1~6).

o 혐오표현이란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이하 ‘특정 속성’이라 한다)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이다(가이드라인 제2조 제1호). 따라서 혐오표현은 (ⅰ)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ⅱ)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ⅲ)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 참고). 그리고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에 해당하지 않으나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비하·조롱하는 표현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가이드라인 제11조 제3항). 그러므로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에 대해서는 제11조 제1항 각호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리고 이에 이르지는 않지만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비하·조롱하는 표현에 대해 회원사는 제11조 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o 성적지향과 관련한 혐오표현 게시물의 처리에 있어서도, 모욕죄, 명예훼손 등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례를 제외한다면 혐오표현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 또 혐오적이라는 이유로 표현행위를 형사처벌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는 점, 혐오표현의 해악을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는 것은 중장기적인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점, 인터넷상의 혐오표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와 정보통신망 사업자의 태도와 책임 의식이 중요하다는 점, 규제되는 혐오표현의 범위를 확대하고 제재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과 혐오표현으로 판단되는 범위를 좁히고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넓혀 보장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 간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o「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은 특정 집단이 혐오표현으로 인해 차별·배제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보장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동시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한 비판적 표현을 통해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는 경우에도 무조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제3조).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을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으로 규정하면서(제2조 제1항 제1호), ‘혐오표현’에 해당하려면 첫째,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둘째,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셋째,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이라는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제9조 제1항). 또 회원사는 제9조 제1항에 따른 혐오표현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비하·조롱하는 표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제11조 제3항). 이러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하도록 했다(제9조 제2항).

o「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속성’을 판단할 때는 해당 속성의 유형, 해당 속성 집단의 규모, 해당속성 집단이 사회적 소수이거나 약자인지 아니면 사회적 다수나 주류

를 차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 '단어가 쓰인 맥락'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단어가 쓰인 문맥 뿐 아니라 게시글 작성의 목적과 용도, 서비스나 게시 공간의 특성, 초래되는 위험, 게시자의 속성,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기존의 유사한 결정에서 해석하고 적용한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o 다만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즉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해 비하·조롱하는 표현에(이하 "비하·조롱 표현")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제11조 제3항). 혐오표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 가이드라인에서 이러한 "비하·조롱 표현"을 적시하고 각 개별 회원사가 자율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둔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이라는 공론의 장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혐오표현을 명확히 해석하기 위함이다. 종종 단순한 "비하·조롱 표현"을 "혐오표현"으로 오인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시도가 사회 각계에서 존재한다. 각종 단체는 자신들에 대한 단순한 비판의 의미로 표현되는 "비하·조롱 표현"에 대하여도 혐오표현임을 주장하며 삭제 등 엄격한 조치를 요구하나, 이러한 요구가 명확한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수용될 경우 일반시민의 표현의 자유는 불합리한 제한을 받으며 우리 사회 공론의 장으로써 인터넷이 가지는 의미와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 둘째,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각 회원사 정책의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함이다. 본 가이드라인에 의해 혐오표현으로 결정될 경우 모든 회원사는 해당 표현에 대하여 제11조 제1항의 각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혐오표현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해당 회원사가 지향하는 사업의 모습과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 표현에 대하여는 각 회원사의 다양한 정책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혐오표현에 이르지 아니하나 표현의 수용자 입장에서 건전하지 못한 표현에 대하여 회원사 자율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셋째, 혐오표현에 이르지 아니한 "비하·조롱 표현"이라 할지라도 그 판단에 있어서 회원사 일방의 결정에 의하는 것보다는 제3의 전문적 독립기관에 의하는 것이 회원사의 영업의 자유와 일반 시민의 표현의 자유 간의 충돌을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KISO는 회원사로 구성되었지만 각 회원사의 이해관계가 다양한 바 특정 회원사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해 인터넷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설립된 독립적 전문 자율정책기구다. 따라서 혐오표현에 이르지 못한 "비하·조롱 표현"이라 할지라도 그 여부가 KISO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짐으로써 법익충돌의 조화에 기여할 수 있다.

o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을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이하 '특정 속성'이라 한다)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이라고 정의하며(가이드라인 제2조 제1호),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이 특정 속성에 해당함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혐오표현에 대한 조치의 필요성은 혐오표현이 미치는 해악이 중대하면 중대할수록 더욱 커진다. 혐오표현은 혐오의 대상이 되는 집단 구성원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특정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열등하거나 위험한 존재로 규정하여 이들에게 위축감, 공포감, 좌절감뿐만 아니라, 자기비하나 자기부정에까지 이르게 한다. 이러한 혐오표현은 여론의 왜곡으로 정책과 제도상의 불평등을 촉진하거나 불평등 시정을 회피하게 만들어 차별과 배제가 구조화된 사회를 만드는 효과를 발생시킬 우려가 크다(국가인권위원회 21진정0140600). 이에 비추어 볼 때 성적지향을 이유로 혐오표현

의 대상이 되는 성소수자들은 항상 우리 사회구성원으로 존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차별과 혐오의 역사 속에서 존재 자체를 드러내기 어려웠다. 성소수자가 자신의 성적 지향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밝히는 "커밍아웃(coming out)"은 "벽장 속에서 나오다(coming out the closet)"에서 유래된 것으로 사회의 부정적 관념과 편견으로 인하여 성 정체성을 숨긴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반영된 용어이다. 이러한 비가시화는 성소수자를 주변화 시키고 관련 법・제도・정책에서의 배제로 이어져 차별을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국가인권위원회 21진정0140600). 따라서 혐오표현심의위원회는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의 심사 시에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였다.

o 글로벌 리서치회사 입소스(Ipsos)가 발간한 2023년 8월 보고서(2023년 6월 성소수자의 달을 맞아 전 세계 30개국 시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성소수자 비율은 조사대상 국가 30개국 평균 9%보다 더 낮다.

o 심의대상 게시물은 언론 기사 “○○○○ 암살범, ‘트랜스젠더 연인’과 동거…좌파 이념 분명”의 댓글로, 해당 뉴스는 2025년 미국 ○○○○ 암살 사건의 암살범의 인물 배경을 다루고 있다. 심의대상 게시물의 내용은 “동성애 성전화 환잔가 또 한명 죽였네. 이래서 동성병은 조형병과 같은 정신병이지.”이다. 이 표현은 특정 성적지향에 대해 ‘동성병’, ‘조형[현]병’ 등 병을 언급하여 차별적 표현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o 그러나 일부 위원은 기사에서 언급한 암살범의 특성과 행위를 서술하였고 특정 성적지향에 관한 자신의 개인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차별을 조장, 강화하는 수준에 이른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o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심의 대상 게시물은 제9조 제1항의 혐오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활용된 단어의 의미나 단어의 사용 맥락을 고려할 때 심의 대상 게시물은 단순히 언사가 거칠다거나 품위와 격조를 잃은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서,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4. 결론

위와 같은 이유에서 요청인의 심의 요청 대상 게시물은「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제9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나 회원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11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혐오표현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심의번호 2025심혐-1-12
요 청 인 회원사
결 정 일 2025. 12. 1.

주 문

혐오표현에 해당함.

이 유

1. 요청의 요지

혐오표현의 사용과 유통을 억제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를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운영하는 회원사는 “성적지향”과 관련한 뉴스 게시물의 댓글 “기존의 사회윤리를 흔드는 동성애 사고는 사회로부터 격리 시켜서 기존사회에 존립할 수 없게 해야 한다.”가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의를 요청했다.

2. 관련 규정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2023. 4. 27.제정, 2024. 2. 27.개정) 제2조, 제9조

제2조 (정의) ①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혐오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이하 ‘특정 속성’이라 한다)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2. 차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
3.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에 대한 표현
4.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자고 주장하는 표현
5.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해를 입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표현

② 전항에 규정되지 않은 용어의 정의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과 해석을 참조한다.

제9조 (혐오표현에 대한 판단)
① 혐오표현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2.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3.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② 제1항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한다.

3. 판단

o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모든 시민에게 명시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자아실현과 진리 발견에 기여한다. 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에 의해 다수 시민의 의견을 집약시켜 민주적 정치질서를 형성·유지하도록 하므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 최대한 보장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의 보호 범위에 해당하는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자아실현이나 진리 발견, 민주주의의 여론 형성에 기여하지 못하고 오로지 특정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이유로 특정한 대상에 대한 차별을 조장· 강화하거나, 특정한 대상에 대한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o「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21조는 제1항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제4항에서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 일반권고 제35호 >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General recommendation No. 35 “Combating racist hate speech”(2013)를 통하여 혐오표현은 “인간의 존엄 및 평등이라는 핵심적인 인권원칙을 거부하는 것”이며,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이 아니라 일정한 제한이 부과될 수 있고, 평등권 및 차별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와 상호 지지하는 인권의 항목임을 확인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21진정0140600). 따라서 시민의 표현 중 혐오표현은「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제한될 수 있는 표현에 해당한다(2023심-혐-1-1~6).

o 혐오표현이란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이하 ‘특정 속성’이라 한다)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이다(가이드라인 제2조 제1호). 따라서 혐오표현은 (ⅰ)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ⅱ)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ⅲ)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 참고). 그리고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에 해당하지 않으나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비하·조롱하는 표현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가이드라인 제11조 제3항). 그러므로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

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에 대해서는 제11조 제1항 각호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리고 이에 이르지는 않지만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비하·조롱하는 표현에 대해 회원사는 제11조 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o 성적지향과 관련한 혐오표현 게시물의 처리에 있어서도, 모욕죄, 명예훼손 등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례를 제외한다면 혐오표현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 또 혐오적이라는 이유로 표현행위를 형사처벌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는 점, 혐오표현의 해악을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는 것은 중장기적인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점, 인터넷상의 혐오표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와 정보통신망 사업자의 태도와 책임 의식이 중요하다는 점, 규제되는 혐오표현의 범위를 확대하고 제재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과 혐오표현으로 판단되는 범위를 좁히고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넓혀 보장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 간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o「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은 특정 집단이 혐오표현으로 인해 차별·배제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보장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동시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한 비판적 표현을 통해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는 경우에도 무조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제3조).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을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으로 규정하면서(제2조 제1항 제1호), '혐오표현'에 해당하려면 첫째,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둘째,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셋째,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이라는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제9조 제1항). 또 회원사는 제9조 제1항에 따른 혐오표현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비하·조롱하는 표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제11조 제3항). 이러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하도록 했다(제9조 제2항).

o「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속성'을 판단할 때는 해당 속성의 유형, 해당 속성 집단의 규모, 해당속성 집단이 사회적 소수이거나 약자인지 아니면 사회적 다수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 '단어가 쓰인 맥락'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단어가 쓰인 문맥 뿐 아니라 게시글 작성의 목적과 용도, 서비스나 게시 공간의 특성, 초래되는 위험, 게시자의 속성,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기존의 유사한 결정에서 해석하고 적용한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o「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을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이하 '특정 속성'이라 한다)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이라고 정의하며(가이드라인 제2조 제1호),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이 특정 속성에 해당함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혐오표현에 대한 조치의 필요성은 혐오표현이 미치는 해악이 중대하면 중대할수록 더욱

커진다. 혐오표현은 혐오의 대상이 되는 집단 구성원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특정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열등하거나 위험한 존재로 규정하여 이들에게 위축감, 공포감, 좌절감뿐만 아니라, 자기비하나 자기부정에까지 이르게 한다. 이러한 혐오표현은 여론의 왜곡으로 정책과 제도상의 불평등을 촉진하거나 불평등 시정을 회피하게 만들어 차별과 배제가 구조화된 사회를 만드는 효과를 발생시킬 우려가 크다(국가인권위원회 21진정0140600). 이에 비추어 볼 때 성적지향을 이유로 혐오표현의 대상이 되는 성소수자들은 항상 우리 사회구성원으로 존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차별과 혐오의 역사 속에서 존재 자체를 드러내기 어려웠다. 성소수자가 자신의 성적 지향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밝히는 "커밍아웃(coming out)"은 "벽장 속에서 나오다(coming out the closet)"에서 유래된 것으로 사회의 부정적 관념과 편견으로 인하여 성 정체성을 숨긴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반영된 용어이다. 이러한 비가시화는 성소수자를 주변화 시키고 관련 법・제도・정책에서의 배제로 이어져 차별을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국가인권위원회 21진정0140600). 따라서 혐오표현심의위원회는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의 심사 시에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였다.

o 글로벌 리서치회사 입소스(Ipsos)가 발간한 2023년 8월 보고서(2023년 6월 성소수자의 달을 맞아 전 세계 30개국 시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성소수자 비율은 조사대상 국가 30개국 평균 9%보다 더 낮다.

o 심의대상 게시물은 언론 기사 “○○○ “성소수자 보호? 누구 관점이냐”…인권위, ‘소수자 권리’ 공방”이라는 기사에 대한 댓글이다. 심의대상 게시물의 내용은 “기존의 사회윤리를 흔드는 동성애 사고는 사회로부터 격리 시켜서 기존사회에 존립할수없게 해야한다.”이다. 성소수자는 앞서 통계자료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 사회의 소수자인데 이들이 가진 사고에 대해 “사회로부터 격리”, “기존사회에 존립할수없게 해야한다.”는 표현은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자고 주장으로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의 혐오표현에 해당한다.

4. 결론

위와 같은 이유에서 요청인의 심의 요청 대상 게시물은「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제9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혐오표현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심의번호 2025심혐-1-13
요 청 인 회원사
결 정 일 2025. 12. 1.

주 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나, 회원사에게 제11조 제3항의 조치 여부에 대한 검토를 권고함.

이 유

1. 요청의 요지

혐오표현의 사용과 유통을 억제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를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운영하는 회원사는 뉴스 게시물의 댓글 “동성애자들을 왜 '성소수자'라고 미화 하는지 모르겠다... 엄연히 성(姓) 장애인 아닌가?”가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의를 요청했다.

2. 관련 규정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2023. 4. 27.제정, 2024. 2. 27.개정) 제2조, 제9조, 제11조

제2조 (정의) ①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혐오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이하 ‘특정 속성’이라 한다)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2. 차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
3.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에 대한 표현
4.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자고 주장하는 표현
5.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해를 입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표현
② 전항에 규정되지 않은 용어의 정의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과 해석을 참조한다.

제9조 (혐오표현에 대한 판단) ① 혐오표현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2.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3.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② 제1항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한다.

제11조 (혐오표현에 대한 조치) ① 회원사는 혐오표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혐오표현 조치”라 한다)를 취할 수 있다.
1. 삭제 조치
2. 해당 표현을 가리거나 노출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
3. 경고 문구, 이용자 주의 문구 등을 표기하는 조치
4. 그 밖에 혐오표현을 제한하거나 그에 준하는 조치
② 회원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혐오표현 조치를 한 후 그 조치 사실을 지체 없이 정보 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 게재자의 사정으로 조치 사실을 알리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나, 회원사별 정책에 따라 통보 대상이 아닌 경우 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③ 회원사는 제9조 제1항에 따른 혐오표현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비하·조롱하는 표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판단

o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모든 시민에게 명시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자아실현과 진리 발견에 기여한다. 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에 의해 다수 시민의 의견을 집약시켜 민주적 정치질서를 형성·유지하도록 하므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 최대한 보장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의 보호 범위에 해당하는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자아실현이나 진리 발견, 민주주의의 여론 형성에 기여하지 못하고 오로지 특정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이유로 특정한 대상에 대한 차별을 조장· 강화하거나, 특정한 대상에 대한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o「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21조는 제1항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제4항에서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 일반권고 제35호 >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General recommendation No. 35 “Combating racist hate speech”(2013)를 통하여 혐오표현은 “인간의 존엄 및 평등이라는 핵심적인 인권원칙을 거부하는 것”이며,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이 아니라 일정한 제한이 부과될 수 있고, 평등권 및 차별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와 상호 지지하는 인권의 항목임을 확인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21진정0140600). 따라서 시민의 표현 중 혐오표현은「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제한될 수 있는 표현에 해당한다(2023심-혐-1-1~6).

o 혐오표현이란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이하 ‘특정 속성’이라 한다)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이다(가이드라인 제2조 제1호). 따라서 혐오표현은 (ⅰ)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ⅱ)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ⅲ)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 참고). 그리고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에 해당하지 않으나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비하·조롱하는 표현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가이드라인 제11조 제3항). 그러므로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에 대해서는 제11조 제1항 각호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리고 이에 이르지는 않지만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비하·조롱하는 표현에 대해 회원사는 제11조 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o 성적지향과 관련한 혐오표현 게시물의 처리에 있어서도, 모욕죄, 명예훼손 등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례를 제외한다면 혐오표현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 또 혐오적이라는 이유로 표현행위를 형사처벌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는 점, 혐오표현의 해악을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는 것은 중장기적인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점, 인터넷상의 혐오표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와 정보통신망 사업자의 태도와 책임 의식이 중요하다는 점, 규제되는 혐오표현의 범위를 확대하고 제재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과 혐오표현으로 판단되는 범위를 좁히고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넓혀 보장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 간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o「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은 특정 집단이 혐오표현으로 인해 차별·배제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보장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동시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한 비판적 표현을 통해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는 경우에도 무조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제3조).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을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으로 규정하면서(제2조 제1항 제1호), ‘혐오표현’에 해당하려면 첫째,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둘째,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셋째,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이라는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제9조 제1항). 또 회원사는 제9조 제1항에 따른 혐오표현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비하·조롱하는 표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제11조 제3항). 이러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하도록 했다(제9조 제2항).

o「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속성’을 판단할 때는 해당 속성의 유형, 해당 속성 집단의 규모, 해당 속성 집단이 사회적 소수이거나 약자인지 아니면 사회적 다수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이나 욕설, 비속어 등에 대해 정보통신망사업자는 약관 등 정책에 따라 일정한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제11조 제3항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도 문제가 된 게시물의 내용과 전체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소 거친 언사나 욕설, 품위나 격조를 잃은 표현의 수준을 넘어 오로지 특정 속성 집단이나 구성원을 비하·조롱하기 위하여 작성된 때로 그 적용이 한정되어야 한다. 또 '단어가 쓰인 맥락'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단어가 쓰인 문맥뿐만 아니라 게시글 작성의 목적과 용도, 서비스나 게시 공간의 특성, 초래되는 위험, 게시자의 속성,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기존의 유사한 결정에서 해석하고 적용한 기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o 다만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즉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해 비하·조롱하는 표현에(이하 "비하·조롱 표현")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제11조 제3항). 혐오표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 가이드라인에서 이러한 "비하·조롱 표현"을 적시하고 각 개별 회원사가 자율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둔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이라는 공론의 장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이 발생하지 않도록 혐오표현을 명확히 해석하기 위함이다. 종종 단순한 "비하·조롱 표현"을 "혐오표현"으로 오인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시도가 사회 각계에서 존재한다. 각종 단체는 자신들에 대한 단순한 비판의 의미로 표현되는 "비하·조롱 표현"에 대하여도 혐오표현임을 주장하며 삭제 등 엄격한 조치를 요구하나, 이러한 요구가 명확한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수용될 경우 일반시민의 표현의 자유는 불합리한 제한을 받으며 우리 사회 공론의 장으로써 인터넷이 가지는 의미와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 둘째,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각 회원사 정책의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함이다. 본 가이드라인에 의해 혐오표현으로 결정될 경우 모든 회원사는 해당 표현에 대하여 제11조 제1항의 각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혐오표현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해당 회원사가 지향하는 사업의 모습과 방향에 부합하지 않는 표현에 대하여는 각 회원사의 다양한 정책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혐오표현에 이르지 아니하나 표현의 수용자 입장에서 건전하지 못한 표현에 대하여 회원사 자율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셋째, 혐오표현에 이르지 아니한 "비하·조롱 표현"이라 할지라도 그 판단에 있어서 회원사 일방의 결정에 의하는 것보다는 제3의 전문적 독립기관에 의하는 것이 회원사의 영업의 자유와 일반 시민의 표현의 자유 간의 충돌을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KISO는 회원사로 구성되었지만 각 회원사의 이해관계가 다양한 바 특정 회원사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해 인터넷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설립된 독립적 전문 자율정책기구다. 따라서 혐오표현에 이르지 못한 "비하·조롱 표현"이라 할지라도 그 여부가 KISO의 결정에 의해 이루어짐으로써 법익충돌의 조화에 기여할 수 있다.

o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을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이하 '특정 속성'이라 한다)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이라고 정의하며(가이드라인 제2조 제1호),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이 특정 속성에 해당함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혐오표현에 대한 조치의 필요성은 혐오표현이 미치는 해악이 중대하면 중대할수록 더욱 커진다. 혐오표현은 혐오의 대상이 되는 집단 구성원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특정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열등하거나 위험한 존재로 규정하여 이들에게 위축감, 공포감, 좌절감뿐만 아니라, 자기비하

나 자기부정에까지 이르게 한다. 이러한 혐오표현은 여론의 왜곡으로 정책과 제도상의 불평등을 촉진하거나 불평등 시정을 회피하게 만들어 차별과 배제가 구조화된 사회를 만드는 효과를 발생시킬 우려가 크다(국가인권위원회 21진정0140600). 이에 비추어 볼 때 성적지향을 이유로 혐오표현의 대상이 되는 성소수자들은 항상 우리 사회구성원으로 존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차별과 혐오의 역사 속에서 존재 자체를 드러내기 어려웠다. 성소수자가 자신의 성적 지향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밝히는 "커밍아웃(coming out)"은 "벽장 속에서 나오다(coming out the closet)"에서 유래된 것으로 사회의 부정적 관념과 편견으로 인하여 성 정체성을 숨긴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반영된 용어이다. 이러한 비가시화는 성소수자를 주변화 시키고 관련 법・제도・정책에서의 배제로 이어져 차별을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국가인권위원회 21진정0140600). 따라서 혐오표현심의위원회는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의 심사 시에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였다.

o 글로벌 리서치회사 입소스(Ipsos)가 발간한 2023년 8월 보고서(2023년 6월 성소수자의 달을 맞아 전 세계 30개국 시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성소수자 비율은 조사대상 국가 30개국 평균 9%보다 더 낮다.

o 심의대상 게시물은 언론 기사 ““엉엉 울고 사정해도 선처없다”…동성결혼 앞둔 ○○○○○△△△, 악플에 경고”의 댓글로, 해당 뉴스는 한 방송사의 ○○○○○에 출연했던 출연자가 오는 11월 미국에서 동성 연인과 혼인 신고를 한다고 밝힌 가운데 일부 악성 댓글에 대한 법적 대응을 다루고 있다. 심의대상 게시물의 내용은 ““동성애자들을 왜 '성소수자'라고 미화 하는지 모르겠다... 엄연히 성(姓) 장애인 아닌가?”이다. 이 게시물은 동성애자를 성소수자로 미화하는 것을 반대하고 이들을 성장애인이라는 소수집단으로 특정해 차별을 조장, 강화하는 측면이 있어 혐오표현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

o 그러나 일부 위원은 “~모르겠다”, “~아닌가”라는 극단적이지 않은 유보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특정 성적지향에 관한 자신의 개인적인 견해를 표명하는 것으로 차별을 조장, 강화하는 수준에 이른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o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심의 대상 게시물은 제9조 제1항의 혐오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활용된 단어의 의미나 단어의 사용 맥락을 고려할 때 심의 대상 게시물은 단순히 언사가 거칠다거나 품위와 격조를 잃은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서,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4. 결론

위와 같은 이유에서 요청인의 심의 요청 대상 게시물은「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제9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으나 회원사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11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혐오표현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심의번호 2025심혐-1-14
요 청 인 회원사
결 정 일 2025. 12. 1.

주 문

혐오표현에 해당함.

이 유

1. 요청의 요지

혐오표현의 사용과 유통을 억제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를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운영하는 회원사는 뉴스 게시물의 댓글 “동성애자들은 몽둥이로 물리치료 해야 된다”가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의를 요청했다.

2. 관련 규정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2023. 4. 27.제정, 2024. 2. 27.개정) 제2조, 제9조

제2조 (정의) ①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혐오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이하 ‘특정 속성’이라 한다)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2. 차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
3.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에 대한 표현
4.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자고 주장하는 표현
5.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해를 입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표현
② 전항에 규정되지 않은 용어의 정의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과 해석을 참조한다.

제9조 (혐오표현에 대한 판단)
① 혐오표현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2.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3.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② 제1항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한다.

3. 판단

o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모든 시민에게 명시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자아실현과 진리 발견에 기여한다. 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에 의해 다수 시민의 의견을 집약시켜 민주적 정치질서를 형성·유지하도록 하므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 최대한 보장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의 보호 범위에 해당하는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자아실현이나 진리 발견, 민주주의의 여론 형성에 기여하지 못하고 오로지 특정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이유로 특정한 대상에 대한 차별을 조장· 강화하거나, 특정한 대상에 대한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o「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21조는 제1항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제4항에서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일반권고 제35호>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General recommendation No. 35 “Combating racist hate speech”(2013)를 통하여 혐오표현은 “인간의 존엄 및 평등이라는 핵심적인 인권원칙을 거부하는 것”이며,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이 아니라 일정한 제한이 부과될 수 있고, 평등권 및 차별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와 상호 지지하는 인권의 항목임을 확인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21진정0140600). 따라서 시민의 표현 중 혐오표현은「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제한될 수 있는 표현에 해당한다(2023심-혐-1-1~6).

o 혐오표현이란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이하 ‘특정 속성’이라 한다)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이다(가이드라인 제2조 제1호). 따라서 혐오표현은 (ⅰ)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ⅱ)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ⅲ)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 참고). 그리고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에 해당하지 않으나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비하·조롱하는 표현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가이드라인 제11조 제3항). 그러므로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

동하는 표현에 대해서는 제11조 제1항 각호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리고 이에 이르지는 않지만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비하·조롱하는 표현에 대해 회원사는 제11조 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o 성적지향과 관련한 혐오표현 게시물의 처리에 있어서도, 모욕죄, 명예훼손 등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례를 제외한다면 혐오표현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 또 혐오적이라는 이유로 표현행위를 형사처벌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는 점, 혐오표현의 해악을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는 것은 중장기적인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점, 인터넷상의 혐오표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와 정보통신망 사업자의 태도와 책임 의식이 중요하다는 점, 규제되는 혐오표현의 범위를 확대하고 제재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과 혐오표현으로 판단되는 범위를 좁히고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넓혀 보장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 간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o「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은 특정 집단이 혐오표현으로 인해 차별·배제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보장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동시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한 비판적 표현을 통해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는 경우에도 무조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제3조).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을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으로 규정하면서(제2조 제1항 제1호), '혐오표현'에 해당하려면 첫째,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둘째,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셋째,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이라는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제9조 제1항). 또 회원사는 제9조 제1항에 따른 혐오표현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비하·조롱하는 표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제11조 제3항). 이러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하도록 했다(제9조 제2항).

o「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속성'을 판단할 때는 해당 속성의 유형, 해당 속성 집단의 규모, 해당속성 집단이 사회적 소수이거나 약자인지 아니면 사회적 다수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 '단어가 쓰인 맥락'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단어가 쓰인 문맥 뿐 아니라 게시글 작성의 목적과 용도, 서비스나 게시 공간의 특성, 초래되는 위험, 게시자의 속성,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기존의 유사한 결정에서 해석하고 적용한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o「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을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이하 '특정 속성'이라 한다)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이라고 정의하며(가이드라인 제2조 제1호),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이 특정 속성에 해당함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혐오표현에 대한 조치의 필요성은 혐오표현이 미치는 해악이 중대하면 중대할수록 더욱 커진다. 혐오표현은 혐오의 대상이 되는 집단 구성원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특정집단이나 그 구성

원을 열등하거나 위험한 존재로 규정하여 이들에게 위축감, 공포감, 좌절감뿐만 아니라, 자기비하나 자기부정에까지 이르게 한다. 이러한 혐오표현은 여론의 왜곡으로 정책과 제도상의 불평등을 촉진하거나 불평등 시정을 회피하게 만들어 차별과 배제가 구조화된 사회를 만드는 효과를 발생시킬 우려가 크다(국가인권위원회 21진정0140600). 이에 비추어 볼 때 성적지향을 이유로 혐오표현의 대상이 되는 성소수자들은 항상 우리 사회구성원으로 존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차별과 혐오의 역사 속에서 존재 자체를 드러내기 어려웠다. 성소수자가 자신의 성적 지향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밝히는 "커밍아웃(coming out)"은 "벽장 속에서 나오다(coming out the closet)"에서 유래된 것으로 사회의 부정적 관념과 편견으로 인하여 성 정체성을 숨긴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반영된 용어이다. 이러한 비가시화는 성소수자를 주변화 시키고 관련 법・제도・정책에서의 배제로 이어져 차별을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국가인권위원회 21진정0140600). 따라서 혐오표현심의위원회는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의 심사 시에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였다.

o 글로벌 리서치회사 입소스(Ipsos)가 발간한 2023년 8월 보고서(2023년 6월 성소수자의 달을 맞아 전 세계 30개국 시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성소수자 비율은 조사대상 국가 30개국 평균 9%보다 더 낮다.

o 심의대상 게시물은 언론사의 “'정부 금지 조치에도…' 헝가리서 성 소수자 10만 명 모여 행진”이라는 기사에 대한 댓글이다. 심의대상 게시물의 내용은 “동성애자들은 몽둥이로 물리치료 해야 된다.”이다. 성소수자는 앞서 통계자료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 사회의 소수자인데 이들에 대해 “동성애자들은 몽둥이로 물리치료 해야 된다.”는 표현은 특정 성적지향이라는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에게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이다. 그 표현이 “몽둥이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몽둥이로 물리치료 해야 된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제9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혐오표현의 판단에는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몽둥이로 물리치료 해야 된다.”는 표현은 그 맥락을 고려해 보았을 때 “몽둥이로 잡아야 한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 표현은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제9조 제1항의 혐오표현에 해당한다.

4. 결론

위와 같은 이유에서 요청인의 심의 요청 대상 게시물은「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제9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혐오표현심의위원회
심의 결정

심의번호 2025심혐-1-15
요 청 인 회원사
결 정 일 2025. 12. 1.

주 문

해당없음.

이 유

1. 요청의 요지

혐오표현의 사용과 유통을 억제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를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운영하는 회원사는 뉴스 게시물의 댓글 “에이즈, 매독 원인 동성애 나라 찢고 국민 보건건강도 찢고 도덕 윤리도 찢고 다 찢냐?”가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심의를 요청했다.

2. 관련 규정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2023. 4. 27.제정, 2024. 2. 27.개정) 제2조, 제9조

제2조 (정의) ①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혐오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이하 ‘특정 속성’이라 한다)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2. 차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
3.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에 대한 표현
4.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분리·구별·제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자고 주장하는 표현
5.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육체적, 정신적으로 해를 입혀야 한다고 주장하는 표현
② 전항에 규정되지 않은 용어의 정의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과 해석을 참조한다.

제9조 (혐오표현에 대한 판단) ① 혐오표현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2.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3.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
② 제1항의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한다.

3. 판단

o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모든 시민에게 명시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자아실현과 진리 발견에 기여한다. 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여론의 자유로운 형성과 전달에 의해 다수 시민의 의견을 집약시켜 민주적 정치질서를 형성·유지하도록 하므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 최대한 보장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의 보호 범위에 해당하는 표현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자아실현이나 진리 발견, 민주주의의 여론 형성에 기여하지 못하고 오로지 특정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이유로 특정한 대상에 대한 차별을 조장· 강화하거나, 특정한 대상에 대한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o「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 제21조는 제1항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제4항에서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 일반권고 제35호 >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General recommendation No. 35 “Combating racist hate speech”(2013)를 통하여 혐오표현은 “인간의 존엄 및 평등이라는 핵심적인 인권원칙을 거부하는 것”이며,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이 아니라 일정한 제한이 부과될 수 있고, 평등권 및 차별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와 상호 지지하는 인권의 항목임을 확인하였다(국가인권위원회 21진정0140600). 따라서 시민의 표현 중 혐오표현은「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제한될 수 있는 표현에 해당한다(2023심-혐-1-1~6).

o 혐오표현이란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이하 ‘특정 속성’이라 한다)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이다(가이드라인 제2조 제1호). 따라서 혐오표현은 (ⅰ) 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ⅱ)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ⅲ)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가이드라인 제9조 제1항 참고). 그리고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에 해당하지 않으나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비하·조롱하는 표현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가이드라인 제11조 제3항). 그러므로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에 대해서는 제11조 제1항 각호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리고 이에 이르지는 않

지만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비하·조롱하는 표현에 대해 회원사는 제11조 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o 성적지향과 관련한 혐오표현 게시물의 처리에 있어서도, 모욕죄, 명예훼손 등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한 사례를 제외한다면 혐오표현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 또 혐오적이라는 이유로 표현행위를 형사처벌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는 점, 혐오표현의 해악을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는 것은 중장기적인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해 접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점, 인터넷상의 혐오표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와 정보통신망 사업자의 태도와 책임 의식이 중요하다는 점, 규제되는 혐오표현의 범위를 확대하고 제재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과 혐오표현으로 판단되는 범위를 좁히고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넓혀 보장함으로써 달성되는 이익 간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o「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은 특정 집단이 혐오표현으로 인해 차별·배제되지 않도록 보호하여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보장함을 원칙으로 하면서, 동시에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 특정 집단이나 구성원에 대한 비판적 표현을 통해 사회적 갈등이 야기되는 경우에도 무조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제3조). 이에 따라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을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으로 규정하면서(제2조 제1항 제1호), '혐오표현'에 해당하려면 첫째,특정 속성에 대한 표현, 둘째,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표현, 셋째,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이라는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했다(제9조 제1항). 또 회원사는 제9조 제1항에 따른 혐오표현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특정 속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비하·조롱하는 표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제11조 제3항). 이러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단어의 의미뿐 아니라 단어가 쓰인 맥락을 고려하도록 했다(제9조 제2항).

o「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속성'을 판단할 때는 해당 속성의 유형, 해당 속성 집단의 규모, 해당속성 집단이 사회적 소수이거나 약자인지 아니면 사회적 다수나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 '단어가 쓰인 맥락'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단어가 쓰인 문맥 뿐 아니라 게시글 작성의 목적과 용도, 서비스나 게시 공간의 특성, 초래되는 위험, 게시자의 속성,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기존의 유사한 결정에서 해석하고 적용한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o「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은 혐오표현을 "인종·국가·민족·지역·나이·장애·성별·성적지향이나 종교·직업·질병 등(이하 '특정 속성'이라 한다)을 이유로,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이라고 정의하며(가이드라인 제2조 제1호),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이 특정 속성에 해당함을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 혐오표현에 대한 조치의 필요성은 혐오표현이 미치는 해악이 중대하면 중대할수록 더욱 커진다. 혐오표현은 혐오의 대상이 되는 집단 구성원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특정집단이나 그 구성원을 열등하거나 위험한 존재로 규정하여 이들에게 위축감, 공포감, 좌절감뿐만 아니라, 자기비하

나 자기부정에까지 이르게 한다. 이러한 혐오표현은 여론의 왜곡으로 정책과 제도상의 불평등을 촉진하거나 불평등 시정을 회피하게 만들어 차별과 배제가 구조화된 사회를 만드는 효과를 발생시킬 우려가 크다(국가인권위원회 21진정0140600). 이에 비추어 볼 때 성적지향을 이유로 혐오표현의 대상이 되는 성소수자들은 항상 우리 사회구성원으로 존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차별과 혐오의 역사 속에서 존재 자체를 드러내기 어려웠다. 성소수자가 자신의 성적 지향을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밝히는 "커밍아웃(coming out)"은 "벽장 속에서 나오다(coming out the closet)"에서 유래된 것으로 사회의 부정적 관념과 편견으로 인하여 성 정체성을 숨긴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반영된 용어이다. 이러한 비가시화는 성소수자를 주변화 시키고 관련 법・제도・정책에서의 배제로 이어져 차별을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국가인권위원회 21진정0140600). 따라서 혐오표현심의위원회는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의 심사 시에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였다.

o 글로벌 리서치회사 입소스(Ipsos)가 발간한 2023년 8월 보고서(2023년 6월 성소수자의 달을 맞아 전 세계 30개국 시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성소수자 비율은 조사대상 국가 30개국 평균 9%보다 더 낮다.

o 심의대상 게시물은 언론 기사 “퀴어축제 ○○ 도심 무지개 행렬, 맞불집회에도 충돌 없이 마무리”의 댓글로, 해당 뉴스는 2025년 6월 ○○에서 개최된 제26회 ○○퀴어문화축제를 다루고 있다. 심의대상 게시물의 내용은 “에이즈, 매독 원인 동성애 나라 찢고 국민 보건건강도 찢고 도덕 윤리도 찢고 다 찢냐?”이다. 그런데 이 표현은 에이즈, 매독과 같은 성병을 언급하며 다소 극단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취지는 특정 성적지향에 대한 개인의 생각을 밝힌 것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거나 폭력을 선전·선동하는 표현에 이른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우므로「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제9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결론

위와 같은 이유에서 요청인의 심의 요청 대상 게시물은「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제9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